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7호

제3중시설물의 지정(해제)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지정 및 해제고시 대상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 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서울디자인지원센터	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283	서울특별시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별표1의 2)에 따른 지정대상	○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○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○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-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-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	지정
우장근린공원 생태육교	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 4-5	서울특별시 강서구청			
시흥3동주민센터	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8길 40	서울특별시 금천구청			
군자기지 후생관	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	서울교통공사	신축에 따른 철거		지정 해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9호

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같은 고시 제2012-192호(2012.7.26.) 및 제2022-364호(2022.8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(변경)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3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일몰기한	비 고
당초	방화3재정비 촉진구역	강서구 방화동 615-103번지 일대	92,152	2012.7.26.	2022.8.8.	2년 연장
변경					2024.8.8.	
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(☎02-2133-7222), 강서구청 도시재생과(☎02-2600-65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